

남편은 결혼직후 첩을 얻어 37년 간 탄살림을 해왔다. 부인은 이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다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자식을 낳았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일까.

서울가정법원 朴徹판사는 2일 金모씨(65·충남)가 부인 李모씨(63)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인의 부정이 남편의 외도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金씨의 청구를 기각, 이혼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아이까지 낳은 것은 명백한 이혼사유지만 남편 金씨 역시 첩을 들이고 李씨를 내쫓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金씨가 李씨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金씨와 李씨는 지난 57년 중매로 결혼한 뒤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 金씨는 결혼 이듬해

첩을 얻는 등 전혀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다가 둘째 아들을 낳은 63년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

그후 부인 李씨는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직접 남편을 찾아나섰다. 李씨는 우여곡절 끝에 68년 전남광주에서 또다른 첩과 살고 있는 남

95.9.3

37년동안 탄살림한 남편 아내不貞 탓할 자격없다

法院, 60代 이혼청구소송 기각

편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 金씨는 두 아들만 빼앗은 뒤 다시 李씨를 내쳤다.

남편을 찾으려다 두아들까지 빼앗겨 실의에 빠져 있던 李씨는 오갈데 없게된 자신을 맞아주었던 崔모씨와 동거를 했으나 그 역시 2개월만에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당

시 李씨는 崔씨의 아이를 갖고 있었다.

그후 崔씨의 아들을 키우며 20여년을 혼자 살아온 李씨는 올해초 남편 金씨의 이름이 적힌 이혼청구소장을 송달받았다. 더이상 남편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지난 30여년의 세월이 너무도 한스러웠던 李씨는 법정에서 『이런식으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朴판사는 『자신이 저버렸던 부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부양의무마저 피하려 한 金씨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미 파탄이 난지 30여년이 지난 金씨부부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은 나중이라도 李씨가 이혼을 청구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李鎬宰>